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가단513396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759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가단5133966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

2. B

변론종결 2020. 8. 25.

판결선고 2020. 9. 22.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3,463,495원 및 그중 72,913,407원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9. 6. 14. 접수 제211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6. 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99,000,000원, 보증기한 2017. 6.

7.1) 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6. 10. 대출금 110,000,000원을 변제기 2020. 6. 5.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20. 1. 6.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3. 31.경 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72,913,4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8%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은 550,088원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9. 6. 12.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3,463,495원(= 대위변제금 72,913,407원 + 법적절차비용 550,088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72,913,4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A이 2020. 1. 6.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2020. 3. 31.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원고가 2016. 6.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6. 12.경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후 기업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A의 무자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30,000,000원인 점,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0,000,000원,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3,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B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명재권

별지

1) 그 후 2020. 6. 5.까지로 연장되었다.